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47 발의연월일: 2022. 11. 2.

발 의 자: 강은미・김홍걸・류호정

배진교 · 심상정 · 양정숙

윤미향 • 윤후덕 • 이은주

장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아니하여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추계되어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이 과소하게 산정됨에따라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더불어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해 지므로 국가의 지원 의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그 규모를명확히 하고, 기금으로부터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며,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제2항,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 0분의 14에 상당하는"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 7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단"을 "보건복지부장 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를 "공단에게 지원한다"로 한다.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
원) ① 국가는 매년 <u>예산의 범</u>	원) ① <u>전전년도</u>
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	<u>의 17에 해당하는</u>
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	
원한다.	
② <u>공단</u> 은 「국민건강증진법」	② 보건복지부장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서 자금을 <u>지원받을 수 있다</u> .	<u>공</u> 단에게 지원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08조는 2022	<u><삭 제></u>
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u>다.</u>	